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2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서지영·조승환·이헌승

성일종 · 김선교 · 송언석

김용태 · 김도읍 · 박충권

서천호 · 서일준 · 김승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및 제365조등).

그러나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많아지고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간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등).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 ①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제1항 중 "第328條第1項, 第2項"을 "제3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免除한다"를 "免除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 ① 친족 ①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다. ②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 ② 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 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 하지 아니한다. 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前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2項을 適用 하지 아니한다. 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 前3條 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 -----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 -제328조제1항-----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 을 準用한다. ----. ②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 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 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 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 ------免除할 수 있다. -----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 外로 한다.